

[별표 4]<개정 1994.3.11>

계 급 환 산 기 준 표(제34조제2항관련)

구분 계급	국가,지방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	기능직 고용원	군 인	교 육 공 무 원			정부관리 업 체	관련직무 분야학위 소지자
				국민학교·중학교· 고등학교교원	전문대학교원	대학교원		
경정	5급		소 령	18~23호봉	13~18호봉	11~16호봉	과 장 차 장	박사학위 소지자
경감	6급(3년이상)	기능직 5등급	대 위	14~17호봉	11~12호봉	9~10호봉	계장, 대리 (3년이상)	
경위	6급	기능직 6등급	중 위 (항공요원은준위)	11~13호봉	9~12호봉	7~8호봉	계장,대리	
경사	7급	기능직 7등급	준위(중사)	9~10호봉	8호봉이하	6호봉이하	평사원(3년이상)	
경장	8급	기능직 8등급	중사(특경인 전투경찰순경)	4~8호봉			평사원	
순경	9급	기능직10등급 고용원	하사관, 병	3호봉 이하			평사원	

※ 비 고

1. 위표의 기준은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.
2. 검사와 법관은 총경이상으로 특별채용하되, 직명과 호봉에 따라 채용할 계급을 결정한다.
3. 군인란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전투경찰대 및 항공요원으로 특별채용할 때에 한하여 사용한다.
4. 교육공무원란중 국민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, 전문대학교원 및 대학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.